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남산예정자락 재생사업(공원 및 주차장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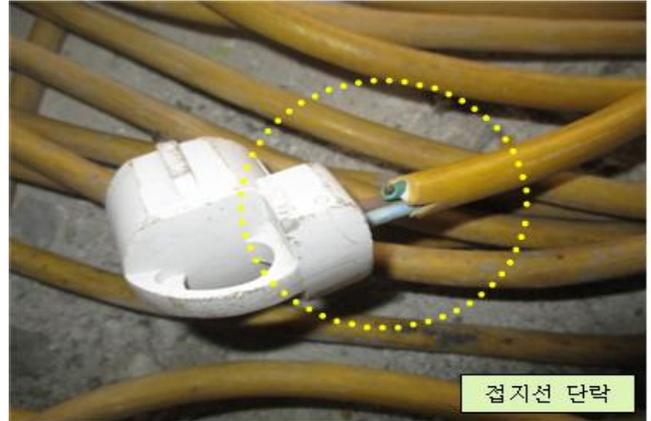
- 점검일시 : 2018.02.27 (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정진혁, 박수엽

<p>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</p> <p>- 기존 구조물 철거와 터파기가 진행되는 현장 여건상 미굴착 부분이 3m이상의 고소 단부가 된 상태로 장비작업만 있는 경우 해당 구간으로 작업자가 통행하지 않도록 폐쇄하고 통행이 필요한 경우 안전간판을 설치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,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</p>	
<p>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</p> <p>- 기존 구조물 상단에 한전 전력시설은 한전에서 이설예정으로 장소가 고소 단부에 위치하여 이설공사시 추락, 낙하, 장비전도 등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업체와 사전협의 후 작업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, 제339조(토석 붕괴 위험 방지)</p>	
<p>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</p> <p>- 소방재난본부 주차장 구조물 상부에 매달려 있는 기존 배관 잔재는 낙하의 위험이 있으니 제거 후 작업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</p>	

○ 감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전선은 사용전 전선의 피복상태, 전선 연결상태 등을 점검하고 사용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7(가설전선)



○ 시공계획 및 승인(방재시설부)

- 현장에서 건설기계(굴삭기)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로자에게 작업내용, 안전사항등을 교육하기 바람. 장비에는 장비실명제를 부착하고 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등)



○ 품질관리(방재시설부)

- 기존 구조물 철거 후 방치중인 구조물 터파기 자리에 유수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건기임에도 1m이상 체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기초 및 기둥, 하부구조 공사의 품질관리와 해빙기, 우기 공사관리를 위해서는 하부공사 시행전 유출의 원인을 조사하여 찾아내고 차수대책 검토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



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, 제 339조(토석붕괴 위험 방지)



○ 품질관리(방재시설부)

- 기존 구조물 철거 후 절단면 하부 기초가 노출된 상태로 주변에 공사중 배수로나 기초 전면에 형성되어 해빙기에 기초저면에 침투할 경우 지지력을 약화시키고,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지반 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수로 유수 정비 후 토사로 되메우기 및 다짐하여 관리요망  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

○ 품질관리(방재시설부)

- 기존 우수관로를 이설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관을 노출시킨 상태로 작업중 장비에 의해 본관이 일부 파손되어 이설전까지 사용해야하는 관로가 훼손되었으므로 파손으로 인한 관내 유입 우수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보수요망  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, 제 341조(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)



○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(방재시설부)

- 기존 구조물 철거 구간중 추가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개소의 2층은 2m이상 고소의 철거공사로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사항이고 구조용 서포트가 철거중에도 지보의 역할을 해야하므로 구조물 안정과 추락, 낙하사고 예방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작업 허가서를 작성 및 승인하고 관련 작업자 협의 후 작업요망  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